

대학 발전 기획위원회 규정

제정 1993. 09. 17.

폐지 2023. 11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고 한다)의 제반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.

1. 대학의 발전계획의 수립·분석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(개정 2016.06.24)
2. 대학 발전계획 관련 재정에 관한 성과·분석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(개정 2016.06.24)
3. 교육기금조성에 관한 사항
4.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5. 기구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6. 건설, 시설계획 및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
7. 교육, 연구풍토 조성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8. 한방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9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3.3.19)

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전 제3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이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의2(경비지급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(조 신설 2018.04.16)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(개정 2019.06.25., 2022.04.20)

제8조(자료제출의무) ①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사 및 연구의 의뢰)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,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의2(평가시기, 평가방법 및 평가활용) ① 성과평가 주기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.

② 평가방법은 기획처에서 평가기초자료를 제공하고, 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. 단, 평가 기초자료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서 세부 추진과제별로, 행정부서는 부서경영계획서, 학과는 학과운영실적 및 발전계획에 의거 평가하며, 학생은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에 의거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 및 학과에 통보하여 업무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③ 1항 및 2항에 의거 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받고, 차기연도 경영계획서, 학과발전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, 학생 만족도조사 평가결과

사항을 포함하여 처리한다. 필요시 재정부운영계획에도 반영하여야 한다.(조 신설 2016.06.24)

제10조(고문단) ① 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대학장기발전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총장의 의사결정에 외부인사의 자문을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고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고문단의 업무총괄 및 주관은 비서실에서 담당한다.(개정 2018.04.16.)

② 고문단은 총장이 추대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며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고문단은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대학의 주요사업계획의 조정
2.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

④ 고문단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(조 신설 2015.3.9)

제11조(실무소위원회) ①본 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③ 위원장은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본 위원회 상정 및 교무위원회 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무위원회에 상정한 안전에 대하여는 다음 위원회 개최 시 심의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.

(조 번호 변경 2015.3.9)

제12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(조 번호 변경 2015.3.9)

제13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불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(조 번호 변경 2015.3.9)

부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간위원회운영규정, 교육개혁추진위원회규정, 한방병원발전위원회규정 및 정원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82, 2015.03.09)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28, 2016.06.24)

이 규정은 2016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12, 2018.04.16)

이 규정은 2018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454, 2023.11.22.)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